



: 2019-04-0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08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도 [REDACTED]시장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 10.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43,215,860원, 지방교육세 2,314,840원, 농어촌특별세 2,700,310원의 부과처분, ② 취득세 54,863,310원, 지방교육세 4,748,920원, 농어촌특별세 2,374,450원의 부과처분, ③ 취득세 17,158,820원, 지방교육세



919,090원, 농어촌특별세 1,072,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9.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건설기계 부품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1. 11. 9. 자동차부품 제조 및 정비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redacted]도 [redacted]시 B 건물 1,732.95㎡을, 2013. 2. 14. 위 같은 지번 토지 3,966.9㎡(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2.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2012. 2. 27. 등록종별을 '건설기계 부분정비업(타이어식은 종합)'으로 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제한특례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취득세 75,624,340원, 농어촌특별세 4,591,220원, 지방교육세 5,942,400원 등 합계 금 86,157,960원을 감면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7. 17.부터 2017. 7. 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1. 1. 원고에게 ① 취득세 43,215,860원, 지방



교육세 2,314,840원, 농어촌특별세 2,700,310원의 부과처분, ② 취득세 54,863,310원, 지방교육세 4,748,920원, 농어촌특별세 2,374,450원의 부과처분, ③ 취득세 17,158,820원, 지방교육세 919,090원, 농어촌특별세 1,072,150원의 부과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8. 29. [redacted]도지사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7. 10. 17.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2. 2. 22.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으로 공장등록을 마치고, 2012. 2. 27. 등록종별을 '건설기계 부분정비업(타이어식은 종합)'으로 하여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마친 다음 원고의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 2동에 선반시설을 설치하고 기계장비 제조업도 영위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25.5톤 이상의 덤프트럭 정비업을 하였는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영위한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수리업이 아닌 건설기계 장비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건설기계 정비업을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기계 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지식경제부의 게시판 등을 통해 건설기계 정비업을 제조업으로 파악하여 취득세 등 감면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건설기계 정비업을 제조업이 아닌 수리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또한 원고와 같이 건설기계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은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만 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특례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조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5.5톤 이상의 덤프트럭 정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인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2. 15.과 2013. 2. 14. 당시 적용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 1호증)에 의하면,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1)은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가 영위한 영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제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9호증)는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로 개정·고시되어 2017. 7. 1.부터 시행된 것(갑 제7호증)인데,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1)이 2017. 7.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지만, 위 분류표는 원고가 그 이전의 시점인 2012. 2. 15.과 2013. 2. 14. 각 취득하여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은 주로 건설기계 정비업을 운영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계장비 제조업도 영위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시의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한 제조장비가 부존재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자동차 정비수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가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원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출원장이 없는 보정자료로 제출한 매출내역에서도 전체 매출액 대비 자동차 부품 제조 매출비율이 2012년 10%, 2013년 5%, 2014년 5%에 불과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볼 수 없다.

③ ■■■도와 ■■■시의 세무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 자동차를 개조 및 개량하여 변형된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설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관, 차체, 도장, 내장품 등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시설만



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정비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기계 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부당한 조세감면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같이 건설기계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은 창업승인 및 공장 설립승인을 득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유독 원고만 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관계 법령

■ 구 조세제한특례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 ... 이하 생략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